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7호 2024. 7. 9.(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72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4-73호 평산2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3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1035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종자골천) 5

남해군 공고 제2024-1052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도산천) 6

남해군 공고 제2024-1053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도산천) 7

남해군 공고 제2024-1070호 2024년 남해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3차) 8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 2024 - 72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18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248442.252	280176.328									
1	10481	도근점	중부	248442.252	280176.328	101.750	127° 52' 35.1940"	34° 49' 43.3518"	20240523	남해읍 평현리 산89	표철	남해군청		
2	10482	도근점	중부	248407.353	280245.325	94.182	127° 52' 37.8970"	34° 49' 42.1998"	20240523	남해읍 평현리 1414-6	표철	남해군청		
3	10483	도근점	중부	248426.897	280305.353	96.149	127° 52' 40.2658"	34° 49' 42.8169"	20240523	남해읍 평현리 산88-3	표철	남해군청		
4	10484	도근점	중부	248416.527	280367.801	91.753	127° 52' 42.7195"	34° 49' 42.4627"	20240523	남해읍 평현리 산92-4	표철	남해군청		
5	11595	도근점	중부	247451.614	285183.845	26.630	127° 55' 51.87166	34° 49' 9.74521	20240605	이동면 초음리 1252-2	표철	남해군청		
6	11596	도근점	중부	247311.861	285199.990	28.913	127° 55' 52.45585	34° 49' 5.20584	20240605	이동면 초음리 1347-2	맨홀태두리	남해군청		
7	11597	도근점	중부	247290.802	285159.472	29.638	127° 55' 50.85406	34° 49' 4.53475	20240605	이동면 초음리 1307-1	표철	남해군청		
8	11598	도근점	중부	247292.948	285130.884	30.890	127° 55' 49.73007	34° 49' 4.61298	20240605	이동면 초음리 1314-1	표철	남해군청		
9	11599	도근점	중부	247284.084	285086.975	32.294	127° 55' 47.99930	34° 49' 4.33858	20240605	이동면 초음리 1315-2	표철	남해군청		
10	11600	도근점	중부	245876.0337	287346.2799	3.4184	127° 57' 16.3606	34° 48' 17.9641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56	표철	남해군청		
11	11601	도근점	중부	245881.4662	287487.8854	3.346	127° 57' 21.9330	34° 48' 18.0966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2	표철	남해군청		
12	11602	도근점	중부	245907.0737	287648.5034	3.2174	127° 57' 28.2608	34° 48' 18.8778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2	표철	남해군청		
13	11603	도근점	중부	245933.7601	287800.8066	3.2245	127° 57' 34.2620	34° 48' 19.6965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56	표철	남해군청		
14	11604	도근점	중부	245767.9283	287813.8679	2.2858	127° 57' 34.7135	34° 48' 14.3118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51	표철	남해군청		
15	11605	도근점	중부	245721.892	287634.1559	4.5195	127° 57' 27.6270	34° 48' 12.8738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133	표철	남해군청		
16	11606	도근점	중부	245644.9409	287549.5395	4.0706	127° 57' 24.2696	34° 48' 10.4032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2	표철	남해군청		
17	11607	도근점	중부	245740.1191	287444.4449	3.9157	127° 57' 20.1713	34° 48' 13.5239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136	표철	남해군청		
18	11608	도근점	중부	245796.5026	287441.1956	4.3738	127° 57' 20.0646	34° 48' 15.3543	20240223	이동면 무림리 1164-6	표철	남해군청		

남해군 고시 제2024 - 73호

평산2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1조에 의거 평산2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21.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평산2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2,130,000천원(국비 1,602,000, 지방비 528,000), 자부담 별도 (90,597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 인프라 : 마을안길 정비 1식, 가드레일 설치(90m), 상수도개량 1식, 재래식 화장실 정비(22호)
 - 주택정비 지원 : 빈집정비(기존15호 → 변경11호), 슬레이트지붕개량(37호), 집수리(기존2호 → 변경3호)
 - 마을환경 개선 : CCTV 설치(1식), 보안등 설치(6개소)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마을리더 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

※ 분야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 업 비 / ()외서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130,000	1,602,000	528,000	90,597
생활·위생· 안전인프라	소 계		927,620	746,426	181,194	
	■ 마을안길정비	1식	498,708	403,296	95,412	
	■ 가드레일설치	0m	0	0	0	
	■ 상수도개량	1식	143,022	114,418	28,604	
	■ 재래식화장실정비	24호	285,890	228,712	57,178	
주택정비	소 계		608,374	425,862	182,512	90,597
	■ 빈집정비	15호	182,168	127,518	54,650	
	■ 슬레이트지붕개량	37호	397,298	278,109	119,189	85,466
	■ 집수리	2호	28,908	20,235	8,673	5,131
마을환경 개선	소 계		80,777	64,622	16,155	-
	■ CCTV 설치	1식	55,660	44,528	11,132	
	■ 보안등설치	6개소	25,117	20,094	5,023	
휴먼케어	소 계		34,250	27,400	6,850	-
	■ 치매예방 프로그램	1식	4,175	3,340	835	
	■ 건강생활체조프로그램	1식	8,350	6,680	1,670	
	■ 문화예술 프로그램	1식	13,525	10,820	2,705	
	■ 백서제작	1식	8,200	6,560	1,640	
주민역량 강화	소 계		24,050	19,240	4,810	-
	■ 마을리더육성교육	1식	8,350	6,680	1,670	
	■ 주민역량강화교육	1식	8,350	6,680	1,670	
	■ 선진지견학	1식	7,350	5,880	1,470	
제경비	소 계		454,929	318,450	136,479	-
	■ 기본 및 세부설계비	1식	94,971	66,480	28,491	
	■ 공사감리비	1식	127,667	89,367	38,301	
	■ 사업관리비	1식	27,810	19,467	8,343	
	■ 잡지출	1식	204,481	143,136	61,344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6. 사업기간 : (당초) 2019년 ~ 2023년(5년간) → (변경) 2019년 ~ 2024년(6년간)

7. 기타(시행계획 열람 장소)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경제과(☎ 055-860-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 - 103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옥영0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
소하천명		종자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425번지		
	면적	2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4년 6월 26일 ~ 2029년 6월 20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모듈설치 부지 우수관 설치 및 우수 배출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105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이병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
소하천명		도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253-1, 1548번지 (중현리 250번지 인근)		
	면적	5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4년 7월 2일 ~ 2028년 12월 31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모듈설치 부지 우수관 설치 및 우수 배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105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운용0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
소하천명		도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248-1, 249-1번지 (중현리 249번지 인근)		
	면적	3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4년 7월 2일 ~ 2028년 12월 31일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모듈설치 부지 우수관 설치 및 우수 배출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1070호

2024년 남해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3차)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에 따라 민간분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남 해 군 수

1. 공모개요

- 목 적 :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게 여건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① 군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② 군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 개인 시설은 지원 불가
 - ③ 군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지원제외 >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3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물 유지 동의를 어려운 경우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개보수비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휴게시설 지상화, 구조물 개선, 벽면·바닥·천장마감, 환기·환풍, 샤워시설, 남·녀 구분
 - 조명설치, 냉·난방기(천장형·벽걸이·스탠드 에어컨), 식수 설비(정수기 등) 설치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비품 지원(의자, 테이블, 사물함, 휴게시설 표지 등)

※ 단, 휴게시설 개선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공동휴게시설 개선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 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및 사업량 : 휴게시설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4개소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20% 별도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사업비 지원 예시>

- ① (보조금 상한액 초과)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원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 5백만원이므로, 보조금 5백만원 전부 지원
- ② (보조금 상한액 이하) B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개선하는 경우 보조금 최대 5백만원이나 총사업비의 80%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만원은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공모기간

○ 2024. 7. 4.(목) ~ 7. 1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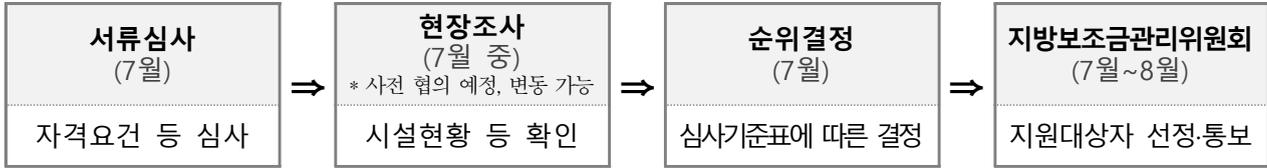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7. 4.(목) ~ 2024. 7. 15.(월) 18:00
- 신청방법 :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시 우편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책자 제본(A4 편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3	단체소개서	1부	서식3
4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4
5	건물주 동의서(건물주가 다를 경우)	1부	서식5
6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서식6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7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서식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1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부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산정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14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무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1부	
15 해당시 가점	2023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장기교육) 3회 이상
	2023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1부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1부	

※ [사군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사용하여 내용 확인

4. 선정절차



- ① 서류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②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 7월 중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수혜인원,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 ③ 순위결정 :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결정
-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4년 7월 ~8월 중 예정(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5. 결과발표

- 2024년 7월 중 /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개선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예. 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됨(재산 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055-860-8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 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